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비타당성조사시 수도권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분석 반영 〉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93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예비타당성조사시 지역균형발전 분석 생략 대상에서 수도권 내 소 음대책지역 등 제외 (안 제38조제6항 및 제7항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3. 6.

다. 회 부 일 :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지역을 제외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군용비용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교통인프라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수도권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하도록 하고,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군용비용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지 아니 하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III. 검토의견

1. 예비타당성조사시 지역균형발전 분석 생략 대상에서 수도권 내 소음대책지역 등 제외 (안 제38조제6항 및 제7항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 현행: 지침으로 규정	○ <u>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u> ○ <u>수도권 사업 등은 지역균형발전 분석 생략 가능</u> - 다만,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u>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u> 은 생략 제외 * 현행 지침에서 추가되는 내용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현행 지침으로 규정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 지침에서는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생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¹⁾,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²⁾에 대해서도 생략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³⁾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⁴⁾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⁵⁾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3.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3)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 4)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 5) 「국가재정법」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7호)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제678호)에서 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수행절차는 ‘①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 ② 경제성 분석 → ③ 정책성 분석 → ④ 지역균형발전 분석 → ⑤ 종합평가 → ⑥ 정책제언’ 순으로 규정되어 있음.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경제성 위주 분석 시 낙후지역일수록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지고 편익이 높게 추정된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평가항목임.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다소 낮게 평가되는 낙후지역에서도 공공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이런 취지를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⁶⁾(과밀억제권역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6) 수도권 내 특수상황지역은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인 인천시

제외),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시 각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며, AHP 수행 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 범위를 적용함. 비수도권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가 30~40%인 반면, 수도권 건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가 없음.⁸⁾ 이에 따라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60

강화군·웅진군,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 ②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인 인천시 중구·강화군·웅진군·서구, 경기도 안산시·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 등이 해당됨

7)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예비타당성조사 분석 방법) 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② 정보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 외에 기술성 분석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의 주요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④ 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 지역별 사업규모 및 사업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은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및 비용-효과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8)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2조(지역균형발전 분석항목) ①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지역낙후도 지수에 의한 지역낙후도, 균형발전효과를 기본적인 세부 평가항목으로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

③ 해당 사업의 시행지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방법을 결정한다.

~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됨.

[AHP 수행시 평가항목 가중치]

(단위: %)

구분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건설사업	비수도권 유형	30~45	25~40	30~40	-
	수도권 유형	60~70	30~40	-	-
정보화사업	B/C	40~50	20~30	-	30~40
	E/C	30~40	20~30	-	40~50
기타 재정사업	B/C	25~50	50~75	-	-
	E/C	20~40	60~80	-	-

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현행 지침과 달리 수도권 내 「공항소음방지법」 및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 내 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현재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수도권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은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시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경기도 부천시·김포시·광명시, 인천시 계양구·서구 일부지역이 해당되며, 인천

제71조(종합평가의 방법) ①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별표 5]와 같은 구조에 따라 AHP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2. 정보화 사업 · B/C 분석시 : 경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 · E/C 분석시 :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3. 기타 재정사업 · B/C 분석시 : 경제성 25~50%, 정책성 50~75% · E/C 분석시 : 경제성 20~40%, 정책성 60~80%

공항 인근의 인천시 옹진군·중구 일부지역이 해당됨.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은 경기도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양주시·여주시·연천군·포천시·용인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포천시·하남시 일부지역과 인천시 남동구·부평구·강화군·옹진군 일부지역임.

[수도권 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현황]

지정 근거 법률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시	양천구·강서구·구로구·금천구 일부지역
	경기도	부천시·김포시·광명시 일부지역
	인천시	계양구·서구·옹진군·중구 일부지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양주시·여주시·연천군·포천시·용인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포천시·하남시 일부지역
	인천시	남동구·부평구·강화군·옹진군 일부지역

자료: 공항소음포털, 국방부 자료 재구성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공항 인근지역은 소음피해와 「항공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⁹⁾ 등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이 낙후되며 재산권에 악영향이 생기는 문제가 있음.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항공기 소음이 증가하거나 고도제한이 강화되면 아파트 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¹⁰⁾

9) 민간공항의 경우 「항공시설법」(법 제34조,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해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군 공항의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법 제6조, 별표 1~5)에 의해 고도제한이 적용됨.

10) 최막중, 김홍중, ‘항공기소음과 고도제한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52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 등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시 수도권 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해 비수도권처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며, 주택방음시설 설치, 주택 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손실보상 및 토지 매수 등의 지원이 이루어짐.¹¹⁾ 또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는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함.¹²⁾

제3호, 2017

1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

둘째, 수도권 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이 있으나, 수도권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예비타당성조사에도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반영하여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우대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은 수도권 건설사업에 대해 비수도권 사업과 달리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¹³⁾ 이는 2019년에 개정된 것으로,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위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0조(종합평가) ①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주)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인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HP 수행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에 대한 평가가 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1. 건설사업(비수도권 유형)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 / 건설사업(수도권 유형)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개편 현황(2019. 4.)]

구분	기존	개편	
		비수도권	수도권
❶ 경제성	35 ~ 50%	30 ~ 45%	60 ~ 70%
❷ 정책성	25 ~ 40%	25 ~ 40%	30 ~ 40%
❸ 지역균형발전	25 ~ 35%	30 ~ 40%	-

자료: 관계부처 합동,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2019. 4.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효과를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용이해지도록 규정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생략) <u><신 설></u> <u><신 설></u>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행하여야 한다.</u> <u>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u> <u>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산어촌만으로 이루어진 지역</u> <u>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 지역</u> <u>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u>

⑥ (생략)	<u>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u> <u>⑧ (현행 제6항과 같음)</u>
--------	---

문의처
02)6788-5155